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도시건설위원회(건축과)

의안번호	제 92호
제 출 자	박영섭 의원 외 8명(2023. 2. 9)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이 성 호

1. 제안이유

서울시 공공건축·시설물에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지침 적용이 의무화 됨에 따라 우리 구도 서울시 관련 지침을 준용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10조에 다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항목 추가(안 제13조제5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 나. 협조부서 : 건축과
- 다.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라. 입법예고 : 2023. 2. 9 ~ 2023. 2.14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지침이 적용이 의무화 됨에 따라 성북구에서도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모든 구민이 공공환경과 건축물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성코자 함을 목적으로 발의 되었음.
-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이란 법률적 용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 제10조¹⁾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장애의 유무,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금번 조례 개정 사유는 서울시로 부터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이 마련 됨에 따라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준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13조 관련 : 제5항을 신설하여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본 조례 개정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검토되었으며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지침 적용으로 사업 추진시 보다 효과성이 기대 될 것으로 판단 됨.

1)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